

광주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209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남훈, 정운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화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9. 7.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603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2013. 12. 6. 및 2015. 12. 31.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3. 12. 6. 및 2015. 12. 31.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의 제3의 나. 2)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18. 7. 20.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1972호로 5,817,245,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8. 8. 15. 확정되었다. 이후 M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462)에 따라 2018.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8,964,409,984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피고는 2018. 8. 29. B를 상대로 3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4203호)을 신청하였고, B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9. 20. 확정되었다.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광주지방법원 1)를 신청하였고, 2018.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0. 19.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552호)을 신청하였고, 2018. 11. 2.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④ 원고는 2019. 7.경 광주지방법검찰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J와 그 아들들인 K, L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그 고소장(을 제7호증)에서, ”피고, B, M은 J 일가의 가족기업으로, J의 지시에 따라 B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무와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마치 B이 M과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M과 피고가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확정되게 한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6,94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M의 청구금액을 8,964,409,984원으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와 채권자 피고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중 72/100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8. 11. 2. 무렵에는 B이 M과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는 2019. 7.경 피고소인을 J, K, L으로 특정하여 이들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그 무렵 J, K, L의 관계, 피고와 B, M의 관계 및 위 각 회사의 지분구조, M과 피고의 각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경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경위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하여 원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중 72/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J와 그 아들들인 K, L이 공모하여 B의 M과 피고에 대한 채무를 허위로 작출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6,94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J 등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9. 7.경에는 B이 피고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B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1. 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김진환, 판사 차기현